

평생교육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교육단체나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진행후의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유능한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양성, 배출하는 사회교육 전문요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2학기이상 등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학생의 경우에 한 한다.

제3조 (신청) 매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자격)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교과목 중 20학점 이상을 2학년부턴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한 자
- ② 위의 자격에 의한 이수과목의 평균평점은 B-(80점)이상이어야 한다.
- ③ 취득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제5조 (실습) 평생교육실습은 3, 4학년때 교무처에 신청하여 학기중 또는 하계, 동계방학중 3주 이상의 실습을 받는다. 학기중 실습기간은 수업공결처리를 한다. 평생교육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들의 실습비로써 총당한다. 단, 학기중 실습은 동일 학기에 타 실습과 병행할 수 없다. <개정 2007. 8. 8., 2011. 6. 15.>

제6조 (자격증 수여방법) 교육과정 이수과 실습을 마친 학생은 마지막 학기 종강전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 ②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영역 일람표
- ③ 실무실습평가서 원본 1부 <개정 2007. 8. 8>
- ④ 최종학력증명서
- ⑤ 성적증명서
- ⑥ 기본증명서
- ⑦ 경력증명서

제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등)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제정지침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7. 8. 8>

부 칙

- ① 이 개정지침은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지침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지침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표

평생교육 관련과목(시행규칙 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
가.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중 1과목
나.선택 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p>※ 비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적용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